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310호

「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제」 2024년도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

「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」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제6조의2에 따라 2024년 하반기 ‘신기술 인증 신청’ 및 ‘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7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『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제』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,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.

1. 신청 자격

- 농림식품신기술(NET)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(기업, 정부출연연, 대학 등)

2. 신청 대상 기술

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(이하 “실증화시험”이라 한다)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 -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
 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
- *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, 신청대상에서 제외

3. 인증 기술분야

기술분야		세부 기술(인증대상 기술 정의)
대분류	중분류 (전문위 구성 기준)	
1. 농업 기술 (4개)	1-1 유전자원·육종	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, 육종 기술, 종자생산·관리 기술 등
	1-2 재배·생산	식량·원예·특용작물 재배 기술,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
	1-3 유통·관리	식량·원예·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, 포장 등 품질유지·관리 기술,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, 검사·검역 기술 등
	1-4 생명공학	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·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 기술 등
2. 축산·수의 기술 (3개)	2-1 종축·생산	동물(가축) 육종·번식 기술, 종축개량 기술, 경제 축종 선발기술, 초지·조사료, 사료 및 첨가제, 영양·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
	2-2 유통·관리	축산물 유통·품질관리, 도축·저장기술, 축산물 위생·안전 관리 기술 등
	2-3 동물질병·수의약품	동물질병 예방·진단·진료·치료·검역기술,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, 수의약품·공중보건 기술 등
3. 식품 기술 (3개)	3-1 식품가공·제조	식품 화학, 식품 미생물·발효, 식품 가공·공정 기술, 식품 포장·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
	3-2 기능성·영양	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,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
	3-3 위생·안전	식품 가공·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·안전성 확보기술, 식자재 위생·안전 기술 등
4. 임업 기술 (2개) * 목재 생산 가공 관련 기술 제외	4-1 임산물 재배·생산	임산물 육종·양묘 기술, 임산물 재배·생산성 향상 기술, 신규 임산자원 활용·재배 기술 등
	4-2 임산물 가공·유통	임산물 수확 후 관리·저장기술, 임산물 가공기술,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,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등
5. 농림식품 기반기술 (3개) * 신기술 농업기계 제외	5-1 토목·시설·환경	농업수리·관개·배수, 토목 설계·구조·시공, 농지조성·보전 기술, 농업환경·생태계 조절·관리·정화기술, 재해·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
	5-2 농자재	농약(화학·생물), 비료,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등
	5-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	농업기계·시스템, 축산기계·시스템, 임업기계·시스템, 식품 기계·시스템, 농식품 시설 설계·환경 제어 기술,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
6. 농림식품 융복합 (3개)	6-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	바이오칩·센서, 나노·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 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기술 등
	6-2 농생명 에너지 자원	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, 관리기술 등
	6-3 농생명 정보·전자	농림축산식품의 생산·유통 유통·유통 정보화 기술, 생물 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
대분류 6개 기술	중분류 18개 기술	

* 「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목재 관련 기술은 산림청, 「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진청 별도 시행

4.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(NET)와 KRC신기술등록제의 공동인증제 안내

- 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제와 농어촌공사 KRC신기술 등록제의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인증
 - (추진내용) 농림식품신기술에 대해서 KRC신기술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KRC신기술로 등록되어 현장에서 활용
 - (추진절차) 신기술인증 공고 시 KRC신기술 등록 동시 신청 → 사전 검토·심사 추진 → 농림식품신기술인증 확정 공고 후 KRC신기술 등록
 - (대상분야) 토목·시설·환경 분야 등 농어촌공사 현장활용 기술분야

- KRC신기술등록 제도 -

- 사업 소개 :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KRC 신기술로 선정·관리하며, 등록된 신기술은 전국 농어촌공사 사업 현장에서 우선 적용 하도록 홍보하고 촉진하는 제도
- 사업 분야 : 정부인증 신기술 및 한국농어촌공사 성과공유제개발기술
 - * 콘크리트 보수보강, 사면관리 및 보강, 수문, 수질관리 및 개선 등 26개 분야
- 등록 혜택
 - KRC신기술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농어촌공사 기술이용자 홍보
 - 전국의 농어촌공사 사업 현장에서 유사 기술보다 우선 기술적용 검토

5.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

가.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

- 공고기간 : 2024. 7. 17.(수) ~ 8. 19.(월), 18:00 까지
- 접수기간 : 2024. 7. 31.(수) ~ 8. 19.(월), 18:00 까지

나. 신청 방법

- 농림식품신기술(NET) 인증제 홈페이지(www.newat.or.kr)에 신청
 - 신기술(NET)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

다. 제출 서류

○ 신기술(NET)인증 신규 신청

구 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	① 신기술인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② 신청기술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	「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」 별지서식
구비서류	③ 사업자등록증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) ④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(보유 시 제출) ⑤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⑥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⑦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	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
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	⑧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(직전년도 재무제표, 신용평가등급) -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,000% 미만일 것,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B- 이상 일 것, 부도 상태에 있지 않을 것,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 ⑨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(KRC 건설공사 적용현장 분석, 활용 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)	해당자료 필수 제출
참고사항	○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,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 될 수 있음 ○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○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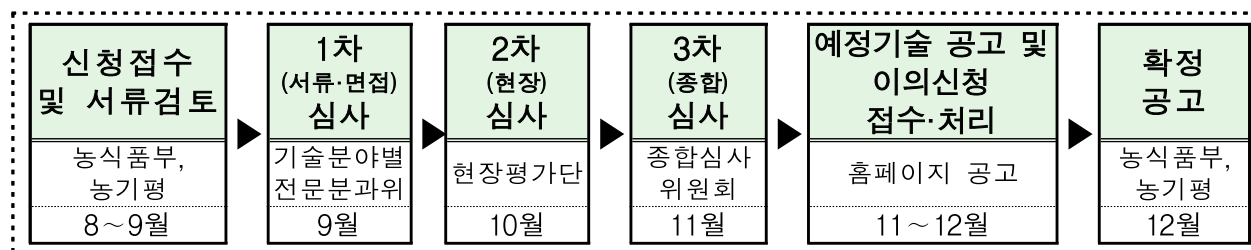
○ 신기술(NET)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

- 신청대상: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
- 접수기간: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
* (예시) 2024 6. 30.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술의 경우, 2024 4. 30. 까지 신청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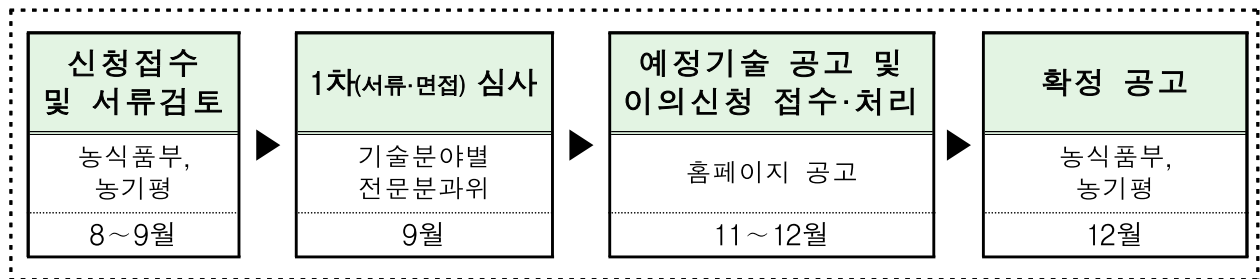
구 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	①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② 신청기술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	「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」 별지서식
구비서류	③ 사업자등록증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) ④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빙자료	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
참고사항	※ 신규신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비	

6. 심사·평가 절차

- 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 심사·평가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농림 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-41호)을 적용함
- 1차(서류·면접)심사: 신청기술의 기술성, 경제성, 경영성 평가 등
- 2차(현장)심사: 1차심사 결과 확인, 시제품 성능,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
- 3차(종합)심사: 1·2차심사의 적정성,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
- 신기술(NET) 인증 심사 절차 및 추진 일정



○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



* 심사 추진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, 심사 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심사 진행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(www.newat.or.kr)에서 확인 가능

7. 심사비용

-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: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
 - 1차(서류·면접)심사: 20만원(1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, 개별통보)
 - 2차(현장)심사: 50만원(2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, 개별통보)
 - 3차(종합)심사: 20만원(3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, 개별통보)

8. 문의처

- 문의: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)201-2456
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)338-9795
- 이메일: ohjin1980@ipet.re.kr
-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(www.newat.or.kr) 및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(www.ipet.re.kr) 공고 및 안내자료 참조